

제159호

행정 명령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직원 오분류 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영구적인 합동 태스크 포스를 설립할 것

수백만명의 뉴욕 노동자들이 자주 임금 횡령, 보복,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불안정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노동 시간과 소모품, 직업 훈련이나 유니폼 불법 공제를 포함하는 불공정한 노동 관습으로 착취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주의 증가하는 수 많은 고용인들이 법적으로 “직원”으로 분류해야 마땅한 노동자들조차 “독립 계약자”로 개인을 부당하게 분류하기 (이하 “직원 오분류 행위”라고 칭함)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 착취와 직원 오분류 행위는 취약한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보호와 혜택을 박탈하고, 주택, 음식, 기타 생필품을 감당할 노동자들의 능력을 감소시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 착취와 직원 오분류 행위를 하면 상습적 위반 고용주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적절한 경쟁상의 이점을 얻게 되고, 사회 서비스의 지불 요구가 증가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뉴욕 주로부터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주의 정책이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차별과 싸우며, 모든 뉴욕 주민에 대한 복지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주는 노동자들로부터 힘들게 번 임금을 빼앗아가고 법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보호를 거부하는 임금 횡령과 불공정 노동 관습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 9월 5일, 행정 명령 17 호가 체계적으로 직원 오분류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상습적 위반 고용주의 기소를 촉진하기 위해서 합동 집행 태스크 포스 (이하 “JETF”라고 칭함)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 오월에 주지사 본인이 불법 관습과 네일샵의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방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며, 무허가 비지니스와 뉴욕 주 법을 준수하지 않은 비지니스를 폐쇄하고, 뉴욕 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한 네일샵 업계 준법 태스크 포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 칠월에 주지사 본인이 주 전체에 걸쳐서 추가적인 업계의 불법 관행을 식별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급증하는 임금 상환을 선도하는, 착취당한 노동자 태스크 포스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 착취와 직원 오분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주 정부의 모든 기관이 착취당한 노동자를 지원하고, 학대하는 고용인을 기소하고,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종료시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합동 태스크 포스의 창설은 노동자 착취를 종료하고 고용주가 모든 해당 법률, 규칙,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도록 조정하는 기관의 노력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인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력과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이에 의하여 직원 오분류 행위와 노동자 착취에 대한 합동 태스크 포스를 창설하는 바입니다. (이하 “합동 태스크 포스”라고 칭함).
2. 네일샵 태스크 포스와 착취당한 노동자 태스크 포스는 JETF의 임무와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합동 태스크 포스로 합쳐질 것입니다.
3. 합동 태스크 포스는 농무 및 시장부, 보건부, 노동부, 주무부, 세무 및 재무부, 아동 및 가족 서비스청, 형사 사법 서비스 부서, 신앙 기반 지역 사회 개발 서비스청, 인권 부서, 임시 장애 지원청, 뉴욕 주 주류 허가 기관, 주 경찰, 산업재해 보상위원회, 그리고 필요하거나 합동 태스크 포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다른 기관 및 당국 (“합동 태스크 포스 멤버”라고 통칭함)으로 이루어집니다.
4. 합동 태스크 포스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영구적인 상설 기구로 설립됩니다:
 - a. 적시에, 의심되는 직원 오분류 행위와 노동자 착취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합동 태스크 포스 멤버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시킵니다;
 - b. 기관 상호간의 소개에 대한 규약을 설정하고, 타당할 경우, 당국에 기소를 하기 위해 사건 참조를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 c. 노동 및 지역 사회 단체, 기업 및 기업 연합, 다른 시민 단체들과 협력해서 작업합니다:
 - (1) 직원 오분류 행위와 노동자 착취를 예방, 감지, 억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개발합니다, (2) 직원 오분류 행위와 노동자 착취의 혐의가 있는 사례를 식별하고

보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향상시키거나 수정합니다, (3) 교육상의 필요 또는 규정 준수의 기회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 d. 직원 오분류 행위와 노동자 착취가 일반적인 업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포함하여 기존의 수사 방법과 집행 조치를 평가하고 개선합니다;
 - e. 소개와 다른 방법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기타 관련된 정보를 모집하는 것을 포함하고, 직통 전화, 문자 메시지 메커니즘, 합동 태스크 포스 웹사이트에 한정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잠재적 위반자에 대한 식별과 불만 신고의 서류정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 f. 교육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직원 오분류 행위와 노동자 착취에 의해 가해지는 불법과 피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시킵니다;
 - g. 오분류 행위와 착취를 당한 취약 집단에 대한 시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방, 주, 지역 사회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 h. 기존의 모든 법 또는 절차적 모호성 또는 불일치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집행과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잠재적인 규제 가능성, 법의 명시, 예산, 행정 또는 다른 조치를 확인합니다.
5. 합동 태스크 포스 팀은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자와 기업 대표들이 직면한 직장 문제에 대해 좀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 전체의 진실 찾기 세션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6. 뉴욕주의 모든 기관, 부, 부처, 부서 또는 정부 당국은 이 합동 태스크 포스에 협조해서 합동 태스크 포스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당하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천십육년 칠월 이십일부로 본인의 권한과

Albany 시의 주 인감의 권한으로

이를 명령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